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나19404 판결 [보증금반환 청구의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나1940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12 선고 2018가단5017351 판결

전 문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이동산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선호

변론 종결 2019. 10. 2

판결 선고 2019. 10. 30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12. 선고 2018가단501735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700,000원과 그 중 57,7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31. 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각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이 유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보증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도록 할 피고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거나 피고가 C에 대해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입점 계약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가 상실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9, 10, 25호증,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C이 2017.1. 17.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대표이사 D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그 무렵 C은 D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2017.2. 21. 그 집행을 완료한 사실,위인도 소송의 재판부는 2018. 2. 13. 'C과 피고는 이 사건점포에 관한 전대차 계약을 2018. 2. 1. 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하였는데, C 과 피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D 는

이의신청을 한사실, C과 피고 사이에서는 위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고, C은 2018. 3. 13. D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D가 이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소제기와 점유이전 금지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원고로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도록 할 피고의 의무가 이 행불능이 되었다고 보기어렵다.

또한 피고가 C에 대해 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이 이사건 입점계약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배신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이행불능 또는 신뢰상실을 이유로 이 사건 입점계약의 해지를 주장할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사건 입점 계약이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보증금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갑 제 19내지 24호증, 갑 제 27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실제 카드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돈에서 공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안판사 성원제판사 김지영